

外部監査의 雇傭誘引에 관한 研究

—有效法人稅率을 이용한 稅務情報誘引의 추가적 검토—

郭 守 根* · 金 評 基**

『目 次』	
I. 서 론	
II. 외부감사 고용유인의 선행연구	
III. 유효법인세율의 의미	V. 실증분석방법
1. 유효법인세율의 의의	1. 연구모형
2. 유효법인세율의 연구	2. 설문구성 및 변수의 정의
3. 유효법인세율의 구분	3. 자료수집
IV. 외부감사 고용유인의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도출	4. 통계분석방법
1. 외부감사의 특성	VI. 실증분석의 결과
2. 외부감사 수요	1. 자료의 기술통계
3. 연구가설의 도출	2.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3. 세무관련 감사효익의 영향분석
	4. 유효법인세율의 영향분석
	VII. 결 론

I. 序 論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외부감사는 公共財의 성격을 가지며 또한 감사품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觀察可能性이 낮다는 이유를 근거로 기업에 외부감사를 강제하는 정부의 규제는 당연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외부감사의 私的財 특성이 제시되고 감사품질의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名聲機構의 역할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DeAngelo, 1981]. 또한, 외부감사가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과 같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거래될 수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Chow, 1982; Palmrose, 1984; Eichenseher and Shields, 1983; Francis and Wilson, 1988; Romax, et al., 1985; Simunic and Stein, 1987; Beatty, 1989; Slovin, et al., 1990].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주주나 채권자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助教

있는 대리이론(또는 계약이론)이나 정보이론 그리고 이들 두 이론을 결합한 信號理論을 이론적인 배경으로 하여 기업의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고용하며 더 나아가 고품질 감사를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을 뿐 투자자와 채권자를 제외한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재무정보의 또 다른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정부기관, 구체적으로 세무기관의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기업의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고용하려는 유인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의 재무정보요구와 경영자의 회계의사결정과의 관련성은 주로 경영자의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 선택에 관한 ‘政治的費用假說’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많은 실증문헌들에서 그 관련성에 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Watts and Zimmerman, 1986]. 범인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정치적 비용의 한 요소이며 기업의 의사결정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경영자의 外部監查 払倣意思決定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감사의 규제환경하¹⁾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주주, 세무기관, 채권자 등의 외부이해관계자의 정보요구 충족, 그리고 기업의 내부통제에 대한 보완효과를 고려하여 외부감사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특히 세무기관과 주주의 정보요구가 채권자나 내부통제 관점에 못지 않게 기업의 외부감사 고용유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평기, 1992].

본 연구는 기업의 유효법인세율(effective tax rate)이 세무기관의 정보요구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 논의하고 이것이 기업의 외부감사 고용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규모효과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요구뿐만 아니라 稅務機關의 情報要求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기업규모와 有效法人稅率간의 관련성도 분석하여 유효법인세율이 기업의 외부감사 고용유인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 이를 고려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수요하는 과정에 대한 理論的 背景의 검토와 研究假說의 도출 그리고 도출한 연구가설의 실증분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장, 3장, 그리고 4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연구가설을 도출하며 제5, 6장에서는 실증분석을 다룬다.

제 2 장에서는 외부감사의 수요를 다룬 기존문헌을 고찰하고, 제 3 장에서는 유효법인세율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유효법인세율이 기업의 세무관련 정치적 비용의 대용 변수로 이용될 수 있음을 살펴본다. 제 4 장에서는 경영자의 자발적인 감사수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1) 「외감법」에 따라 자산규모 40억 이상의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규제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기업경영자들의 감사수용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설을 도출한다.

제 5 장에서는 제 3 장에서 도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방법이 다루어지며 가설들간의 관계가 연구모형으로 제시된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에 대해서 설명되며 자료의 수집과정과 분석에 적용되는 統計方法이 제시된다. 제 6 장에서는 가설의 검증결과가 제시되고 제 7 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으로서 연구의 주된 결과가 요약되고 연구의 한계가 제시된다.

II. 外部監査 層傭誘引의 先行研究

기업경영자들의 자발적인 외부감사 고용유인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들은 크게 契約理論, 情報理論, 그리고 規制理論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계약이론에 따르면 차원의 委任人(principals)으로부터 의사결정권한을 위임받은 受任人(stewards, agents)이 위임인과의 이해갈등에서 비롯되는 계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감독을 받으려는 유인을 갖는다[Jensen and Meckling, 1976; Watts and Zimmerman, 1983]. 경제주체들의 效用極大化 가정 하에서 수임인인 경영자들은 항상 위임인의 최대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수임인의 離脫的인 行爲로 인한 위임인의 복지손실을 契約費用이라 하며 이는 기업 가치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투자자나 채권자와 같은 위임인은 경영자의 이러한 이탈적 행위를 예상하며, 이를 그들의 의사결정에 고려하게 된다. 자신의 效用極大化를 추구하는 경영자는 성실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통하여 그의 受託責任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보일 경우, 소유주는 계약 및 감시비용이 감소하므로 경영자에게는 더 높은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南相午, 1991, pp. 181]. 따라서 경영자는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고용하여 공시정보의 信賴性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계약이론을 배경으로 감사수요를 연구한 기존문헌으로는 Chow[1982], Palmrose[1984], Eichenseher and Shields[1983], Francis and Wilson[1988] 등을 들 수 있다. Chow[1982]는 기업이 監査用役을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경영자, 주주, 그리고 채권자들간의 이해충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이해관계 상충의 정도 또는 외부감사의 한계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들이 기업의 감사용역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負債比率과 회계수치에 기초한 負債條項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企業規模가 클수록 외부감사를 고용할 확률이 높다는 증거가 연구의 결과로 제시되었다. Palmrose[1984]

는 품질차별화된 감사인을 8대회계법인/비8대회계법인 및 산업전문 감사인/비전문감사인 등 두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負債比率을 제외한 소유자/경영자 통제구분, 기업규모, 자회사의 숫자, 經營者補償計劃의 채택 여부, 그리고 상장기업 여부 등의 변수들이 기업들의 8대회계법인 고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ichenseher와 Shields[1983]의 연구에서도 감사인 선택은 부분적으로 회사의 契約關係로 설명될 수 있으며, 특히 負債比率이 높을수록 8대회계법인의 고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Francis 와 Wilson[1988]은 회계법인의 監查品質을 감사인 규모(규모모형)와 8대회계법인 소속여부(명성모형) 등 두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名聲模型에서 계약비용의 대용변수들이, 기업의 규모와 성장을 통제한 후에도, 통제적인 유의도를 보였으며, 계약변수의 變化分析에서는 유인보상계약의 유무, 소유권의 분산도, 소유자와 채권자간의 갈등, 그리고 감사인 변경 후의 상장주식의 발행여부 등의 변수들이 고품질 감사인 고용유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이론의 한 부류인 信號理論에서는 외부감사가 일반적인 재화와 마찬가지로 시장기능에 의하여 거래될 수 있는 私的財貨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DeAngelo, 1981], 시장기능을 통하여 기업경영자가 재무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수요한다고 주장한다. 신호이론에서는 거래당사자간에 情報不均衡(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할 때 판매자인 정보우월자가 구매자인 정보열등자에게 商品價格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품에 대한 품질정보를 제공하려는 유인을 갖는다고 본다. 최근에 이러한 신호이론의 논리를 외부감사에 적용하여 경영자가 우월한 기업품질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나 채권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를 信號手段으로 이용하려는 유인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회계정보의 공시와 외부감사의 수요와 관련하여 시도되고 있다[Romax et al., 1985, Simunic and Stein, 1987; Beatty, 1989; Slovin et al., 1990].

Simunic과 Stein[1987]은 감사인이 제공하는 감사용역의 기본적인 특성을 内部統制, 信賴性, 그리고 經營諮詢 등 세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감사인이 이러한 특성을 중심으로 감사품질을 차별화함으로써 신규상장시 경영자의 감사인 선택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경영자들의 고품질 감사의 고용유인을 분석하고, 신주발행시의 引受契約의 유형, 외부인의 보통주식 지분율, 그리고 不確實性의 측정치 등이 경영자의 회계법인 선택을 설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Beatty[1989]의 연구에서도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회계법인을 고용함으로써 기업공개시에 주식의 발행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이들의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기업공개시장에서 보다 위험한 기업일수록 비8대회계법인

을 고용하며 또한 증권의 登錄期間이 지연된다는 점이다. Slovin 등 [1990]은 은행차입금의 이등, 명성있는 인수기관, 그리고 회계법인 고용 등과 신주발행시의 주식발행가격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銀行借入金을 이용하고 명성있는 인수기관을 고용함으로써 신주발행시에 발행가격의 저평가를 완화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政治的費用” 때문에 외부감사에 대한 수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 規制理論 측면에서도 정부기관이 기업의 회계정보를 이용한 규제관행으로부터 기업의 자발적인 외부감사 수요의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의 회계선택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政治的危險假說로 알려져 있으나, 외부감사의 수요와 관련하여서도 계약이론과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규제를 통하여 경제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경제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측의 完全한 知識을 가정한다. 그러나, 정보의 蒐集費用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규제기관도 불완전한 정보에 기인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며, 규제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회계정보의 이용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租稅政策은 財務會計基準에 의해 영향받는다. 「國稅基本法」에는 根據課稅의 原則과 함께 기업회계를 존중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법상의 각종 세목별 과세표준은 기업회계상의 이익을 기초로 稅務調整을 통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의 연장으로서 정부의 세무정책은 기업의 회계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규제자들은 높은 이익금액을 獨占의 증거로서 사용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높은 이익은 ① 비교기준이 되는 전기의 낮은 이익, ② 회계절차의 변경, ③ 指率의 변동, ④ 물가상승으로 인한 평가차익, 그리고 ⑤ 獨占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자들은 과대이익의 현실적인 근거를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대되는 효익이 적기 때문에 상세한 利益分析을 시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회계수치는 물가상승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價格指針을 설정하거나 공공시설의 料率을 정하는 데 사용된다. 많은 기업들은 정부규제기관에 의해 가격이나 요율을 규제 받는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요율이나 가격은 회계에서 결정된 原價基準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이와같이, 租稅政策이 기업회계에 기초하여 회계수치를 기초로 편성되어 있으며, 규제과정에서 높은 정보비용을 고려하여 회계수치(이익 등)가 정치과정에서 정부규제를 옹호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관리(公共料率의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면 정부규제는 경영자들의 會計節次 選擇意思決定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위험가설’

의 분식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회계수치를 이용하는 정부의 조세정책 등의 규제에 대응하여 초래되는 경영자의 도덕적 위험은 정부기관에 의해 합리적으로 예측되며, 정부는 일반투자자들의 가격 방어와 동일한 유형의 정책을 입안하고 기업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회계수치는 기업규제에서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관심은 정부규제와 관련한 회계수치의 역할로부터 기업들의 자발적인 외부감사 수요의 가능성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검토한 외부감사 수요의 도출과정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요컨대, 회계정보가 규제에 이용될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업에서는 정치적 위험, 즉 規制費用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계수치를 유리하게 보고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규제자들은 기업의 이러한 유인을 합리적으로 예상하여 요율규제, 세무조사, 그리고 벌칙금과 같은 불이익을 과하는 價格防禦를 행사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외부감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外監法」에 의하여 외부감사가 강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감사환경에서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감사 受容에 대한 의견조사에 기초하여 契約理論, 情報理論, 그리고 規制理論을 배경으로 기업의 외부감사 고용유인 분석이 시도되었다[김평기, 1992]. 분석의 결과, 경영자들은 채권자보호나 기업의 내부통제보완 목적보다는 稅務機關과 株主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으려는 유인이 더 높은 것으로, 그리고 기업의 규제 및 계약비용이 감사수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상장기업과 등록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외부감사의 고용유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장기업과 등록기업간에는 고용유인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규모가 크고, 외부주주의 비율이 높으며, 부채의존도가 높아 金融費用에 대한 부담이 큰 기업일수록 외부감사의 고용과 관련하여 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재벌기업은 외부감사의 고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투자자나 채권자를 중심으로 한 資本市場에서의 정보욕구와 관련한 외부감사 고용유인을 분석한 것이며 세무기관의 기업에 대한 회계정보 요구와 관련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김평기[1992]에서는 세무기관의 신뢰성있는 정보요구가 경영자들의 외부감사 고용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기는 하나 이는 경영자의 일반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크기에 따른 차별적인 감사고용유인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효법인

세율이 기업의 법인세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와 관련한 정치적 비용이 경영자의 의무감사 고용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III. 有效法人稅率의 意味

1. 有效法人稅率의 意義

기업의 정치적 과정에서의 성공 또는 정치적 규제과정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政治的費用(또는 규제비용)에 대한 부분적인 측정으로써 유효법인세율이라는 기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정도가 이용되고 있다[Zimmerman, 1983]. 우선, 기업은 정치적 과정에서의 성공으로 과세가능소득에서의 특별한 공제(所得控除), 과세대상소득에서의 제외(非課稅所得), 그리고 稅額控除 등 세제상의 특별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제상의 惠澤이 큰 기업일수록 더 낮은 과세표준을 보고하게 되어 주어진 이익수준에서 보다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따라서 유효법인세율은 세제상의 혜택을 확보하는 데 보다 성공한 기업일수록 낮을 것이다. 평균적인 유효법인세율은 법인세 과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정치적 성공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이 부담하는 政治的費用의 크기를 나타내며 많은 기존문헌에서는 기업의 회계방법선택에 대한 ‘정치적 비용가설’의 검증에서 유효법인세율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유효법인세율은 단지 기업의 정치적 비용에 대한 부분적인 측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인세율에는 독과점 금지, 규제, 정부보조금과 수주계약, 수입 할당이나 관세 등과 같은 다른 政治的費用/效益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효법인세율은 정치적 비용의 요소를 구성할뿐만 아니라, 만일 기업의 성공도가 유효법인세율과 경의 관계가 있으며 성공적인 기업일수록 보다 정부감독을 받게 된다면 현재의 또는 미래의 정치적 비용에 대한 대응변수일 수도 있다. 대기업일수록 더 성공적이며 더 높은 유효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대기업의 경우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가 고정적이다. 만일 두 기업이 동일한 자산과 부채를 갖는 경우 더 성공적인, 즉 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영업현금흐름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비율이 더 높게 되어 보다 성공적인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2. 有效法人稅率에 관한 研究

많은 기존문헌들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정부로부터의 규제와 이에 따른 富移轉의 가능성성이 높으며 따라서 대기업일수록 이익감소 회계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政治的費用

假說'을 제시하였으며, 실증연구의 결과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Hagerman and Zmijewski, 1978]. 그러나, 실증이론에 있어서 기업규모가 내포하는 의미의 다변성에 비추어 기업규모와 회계선택 간의 관련성을 정치적 비용으로만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비록 기업규모가 정치적 비용의 대용변수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비용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원천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법인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정치적 비용의 한 요소이며 기존의 회계방법선택에 대한 실증문헌에서는 有效法人稅率을 기업의 법인세관련 정치적 비용의 대용변수로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만일 대기업들이 더 높은 유효법인세율을 보인다면 이는 정치적 비용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상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法定法人稅率(statutory tax rate)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지만, 投資稅額控除를 비롯한 각종 세법규정은 기업 또는 산업간에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를 유발한다. 유효법인세율의 이러한 차이를 기초로 기업의 정치적 성공을 부분적으로나마 측정할 수 있게 된다[Hagerman and Zmijewski, 1978; Jarrell, 1979; El-Gazzar et. al., 1986].

기존문헌에서 기업규모를 기업의 정치적 비용, 즉 경영자의 이익감소 회계절차 선호에 대한 대용변수로 이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Zimmerman[1983]은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 간의 관련성분석을 통하여 기업규모는 기업의 법인세관련 정치적 비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법인세관련 정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회계방법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二項檢證과 時系列分析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략적으로 미국의 50대 상위 상장기업, 특히 석유가스업들이 다른 기업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유효법인세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유효법인세율이 기업규모에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상위 50대 기업은 비교적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데 비해서 나머지 기업규모 범주들에서는 균일한 세율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斷層效果(threshold effect)는 Watts and Zimmerman[1978], Zmijewski and Hagerman[1981] 등과 같은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더구나, 세무신고 및 재무제표 자료, 기업규모의 다양한 측정치, 유효법인세율의 다양한 측정치를 대체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기업규모를 기업의 정치적 비용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온 기존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존문헌들에서는 기업의 정치적 과정에서의 성공과 기업규모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예를들어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기업이 법인세 부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Wang[1991]은 유효법인세율은 정치적 성공에 대한 偏倚된 代用變

數일 수도 있다고 보았는데 유효법인세율은 기업의 정치적 과정에 있어서의 성공이라기 보다는 기업의 영업실적에 기인하는 純營業損失(net operating losses; NOL)이라는 요인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만일 기업규모가 NOL과 상관관계를 갖는다면 NOL은 기업규모와 법인세율간의 관련성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영향이 크다면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과의 관계에서 기업의 정치적 성공을 유추하는 것은 편의를 초래할 수 있다. NOL의 영향에 의하여 기업규모가 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 즉 NOL의 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經路分析(path analysis)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NOL의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전반적인 기업규모-법인세율 분석에 있어서 NOL로 인한 편의를 평가할 수 있다. NOL의 간접적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두개의 構造方程式(structural equations)을 갖는 경로도형을 설계하며 구조방정식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潛在變數(latent variable)를 이용한 測定模型(measurement model)을 이용하여 모형화한다. 경로모형과 측정모형은 LISREL에 의하여 추정된다. 구조방정식의 모수추정치를 기초로 경로분석의 결과는 NOL의 간접적인 효과가 기업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전반적인 관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NOL이 기존연구에서 중요한 누락 변수라는 점을 의미한다.

Stickney and McGee[1982]는 법인세제도의 중립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의 주요 기업들간의 有效法人稅率의 차이가 기업규모, 자본집중도, 해외영업활동의 크기, 천연자원과의 관련성, 그리고 부채의 존도와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설명변수들의 결합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群集分析(cluster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저의 유효법인세율을 갖는 기업들은 부채비율이 높고, 자본집중적이며, 천연자원과 관련된 기업들로 나타났다. 해외영업의 크기와 기업규모는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有效法人稅率의 區分

유효법인세율(ETR)은 기존문헌들에서는 이를 계산하는 데 이용되는 이익기준에 따라서 경제적 법인세율(economic income tax rate)], 총이익 법인세율(gross profit tax rate), 회계적 법인세율(accounting income tax rate)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經濟的 法人稅率

이는 일정기간에 기업의 總納稅額(국세, 주세, 외국세, 그리고 지방세를 포함)을 당해간의 ‘經濟的 利益’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여기에서 경제적 이익은 과세 가능소득과 각종 비과세 또는 공제이익 항목들의 합계로 측정된다. 재무제표에 보고된 법인세비용의 당기해

당분은 지급된 법인세를 대용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리고,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이 연법인세계정의 증가분을 세법상의 법인세율로 나눈 금액을 차감한 것이 課稅可能所得을 추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비과세 또는 공제이익항목은 법인세법에 따른 각종 비과세소득, 공제소득, 그리고 최소법인세를 부담하게 하는 이익이연항목 등의 합계로 정의된다. 즉, 과세가능소득으로부터의 모든 특별 비과세항목, 정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공제소득,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갖는 납세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를 부담하는 데 비해 더 많은 소득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더 낮은 또는 0의 세금을 부과하게 하는 과세가능소득의 이익이연 등을 포함한다. 비과세 또는 공제이익항목들은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차이항목에 의해 측정된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공제이익항목은 재무보고 목적으로는 정액법을 사용하면서 법인세 목적에서는 가속상각법을 적용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감가상각비 공제이익은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주석에 나타난 감가상각비의 일시

〈표 1〉 有效法人稅率의 計算例

적 례	요	세무조정내역	
		일시적 차이	영구적 차이
1. 법인세 공제 전 순손실			W(200,000)
2. 익금 산입 항목			
(1) 퇴직급여 총 당금		W122,000	
(2) 재고자산 평가감		34,000	
(3) 대손총당금		23,000	
(4) 접대비			83,000
(5) 벌과금			5,000
(6) 선급비용		32,000	
(7) 감가상각비		13,000	
(8) 외화부채조정계정		37,000	
3. 익금 불산입 항목			
(1) 비과세 이자소득			(10,000)
4. 합 계			
5. 일시적 차이 소계		W261,000	(122,000)
6. 법인세 과세표준			261,000
유효세율의 계산 :			139,000
일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법인세			W0(A)
일시적 차이를 고려했을 때의 법인세			55,600(B)
이연법인세			55,600(C = B - A)
일시적 차이 총계			261,000(D)
유효세율			21.30%(C/D)

적 차이와 개략적으로 동일하다. <표 1>은 이러한 經濟的 有效法人稅率에 대한例이다.

法定法人率(statutory tax rate)과 有效法人稅率간의 차이, 즉 稅額效果(tax effects)는 다음 세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① 어떤 사업년도의 법인세공제전 순이익의 결정에 산입되었으나 과세표준의 결정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년도에 산입되는 손익거래항목.

② 법인소득세 신고상 이월되는 손금항목 또는 공제항목.

③ 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는 산입되나 동 사업년도의 법인세공제전 순이익의 결정에는 제외되는 자본거래항목.

특히, 과세표준과 법인세공제전 순이익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항목들은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구분된다.

1) 一時의 差異(timing difference): 법인세 신고시 어떤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서 기업회계상으로는 다른 사업년도의 법인세공제전 순이익에 반영되는 항목을 말한다. 일시적 차이는 한 사업년도에 발생하였다가 차후 사업년도중에 상쇄 또는 회복되는 항목들인데 이들로 인해 어느 특정 회계기간으로만 보면 법인세가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시적 차이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기업회계가 세무회계보다 수익인식이 빠른 항목: 기업회계에서 수익으로 계상되어 법인세공제전 순이익에 반영된 연도가 課稅標準에 포함되는 연도보다 빠를 경우 발생하는 조정항목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이와같은 예는 드문 실정이다.

② 기업회계가 세무회계보다 비용인식이 빠른 항목: 기업회계상으로는 당기의 비용항목으로 포함되었으나 세무신고상으로는 차후년도의 손금으로 인식되는 조정사항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흔히 볼 수 있으며 세무조정시 捐金否認 留保處理되었다가 추후년도에 추인되는 항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③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보다 수익인식이 빠른 항목: 세무회계상으로 익금으로 인식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도가 기업회계상의 수익으로 인식되어 법인세공제전 순이익에 반영되는 연도보다 빠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들이다. 예를 들면, 기업회계상으로는 인도기준에 따라 당기에 인도완료된 상품만을 매출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미인도상품이지만 인도가능한 상태에 있는 상품에 대한 판매대금 해당액은 당기의 익금으로 인식하여 당기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차후년도에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되어 법인세공제전 순이익에 반영된 때 세무조정 계산상 益金不算入 처리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④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보다 비용인식이 빠른 항목 :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인식되어 법인세공제전 순이익에 반영되는 열도보다 세무조정에 의해 먼저 손금으로 인식되어 과세표준계산시 차감되는 조정사항들로서, 우리나라의 세법상 損金許容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 후라야 가능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예는 드물다.

2) 永久的 差異(permanent differences)

어떻한 거래들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법인세공제전 순이익사이에 발생한 차이 중에서 일시적 차이와는 달리 현행 세법상에서는 차후년도에 상쇄·회복될 수 없는 항목들을 말한다.

(2) 總利益 法人稅率

총이익 법인세율은 賣出總利益(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분)의 합계에 대한 총법인세 지급액의 비율로 정의되며, 이는 Zimmerman[1983]에서 사용된 現金흐름 法人稅率과 비슷하다. 법인세는 장부에 보고된 법인세에서 이연법인세의 변동분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 (income tax liability)/영업현금흐름

이연법인세 변동분을 차감하는 것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일시적 차이 항목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법인세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의 이익이 100원이고 법인세율이 30%라고 하자. 장부상의 감가상각비가 60원이고 세무신고서상에는 70원이라면 장부상의 법인세는 12원인데 비하여 법인세 납부액은 9원이 된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의 변동분은 3이며 이를 장부상의 법인세에서 차감하면 ($12 - 3 = 9$) 법인세 납부액과 일치한다.

문모에는 营業現金흐름이 적용되는데 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발행주의 회계결차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Hagerman and Zmijewski, 1979]. 영업현금흐름은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차이, 즉 매출총이익 또는 여기에서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에 의하여 측정한다. 이러한 영업현금흐름 측정치는 상이한 자본구조에 기인하는 산업 간의 유효세율 측정치의 체계적인 차이를 배제하게 된다.

또한, 만일 대기업일수록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더 보유한다면, 위의 영업현금흐름 측정치는 투자원가(예전대, 감가상각비)의 현금흐름효과를 배제함으로써 대기업의 유효세율을 왜곡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체적인 측정치를 이용하여 겸증을 수행할 수도 있다.

$$\textcircled{1} \text{ 매출총이익} + \text{감가상각비} \quad \textcircled{2} \text{ 영업이익} + \text{감가상각비}$$

(3) 會計的 法人稅率

회계적 법인세율은 법인세차감전 회계이익에 대한 총법인세 지급액으로 정의되는데, 법인세차감전 회계이익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보고된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이다. 이 유효법인세율은 Tax Note[1982]에서 사용된 것이다.

IV. 外部監査 雇傭誘引의 理論的 背景 및 假說의 導出

1. 外部監査의 特性

우선, 감사용역이 사적재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산출물의 감사품질은 비록 비용을 수반하기는 하나 관찰가능한 측면을 가지므로 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감사용역이 무임승차 문제로 인한 외부효과를 가지는 公共財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경제적인 재화는 공공재 측면과 사적재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기업가치는 계약비용을 최소화시키는 監督機構를 고용하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반영한다. 외부감사가 최소비용을 소요하는 감독기구라고 가정할 때, 合理的 期待로 특성지워지는 경쟁적인 자본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감사를 고용한다면 그 기업이 효율적으로 生產 및 投資意思決定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證券價格, 즉 기업가치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比例的 配分을 특징으로 하는 결합소유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는 外部效果를 제거하기 위한 充分條件이라는 사실은 경제학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소유자들간의 사전적인 分配規則에 의하여 감사의 원가와 효익은 완전히 내부화될 수 있다. 현대의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적인 특성인 證券制度는 이러한 分配規則을 충족한다. 즉,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무임승차 유형의 외부효과를 완전히 내부화하기에 충분한 株式會社이다.

기존연구에서는 감사서비스의品質은 관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監査品質을 관찰하는 데에는 비용이 수반되기는 하나 무한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기업들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받기 위하여 감사인과 계약하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의 품질이 觀察可能하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데, 만일 관찰이 불가능하다면 감사받은 회계정보를 기초로 하는 계약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품질의 관찰가능성에 관하여 회계법인이나 감사인 개인수준에서의 차별적인 명성보다는 우리나라의 감사전문직 전체수준에서의 명성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전문적 전체적으로 監査品質, 즉 회계오류나 부정의 발견 및 보고확률과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의 평가는 0보다 크다고 본다.

2. 外部監査 需要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完全情報와 完全競爭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가정 하에, 효용극 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경제 행위가 결과적으로 效率的인 資源配分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경쟁의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완전정보의 가정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되면서 투자자, 채권자 및 규제자를 비롯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에 대한 사실을 알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기업에 대한 정보의 차이, 즉 差別的情報의 존재를 情報不均衡이라 한다. 기업 참가자들 사이에 목표가 일치하지 않고 양자간에 정보가 不均等하게 분포해 있는 경우에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도덕적 위험은 수탁인인 경영자가 투자자나 채권자 등 위임인들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소유경영자와 외부주주간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自己資本의 契約費用이라 하는데, 이는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할 경우 발생한다. 자기자본의 계약비용은 소유권의 분산정도에 크게 의존하며, 여기에는 경영자의 과도한 特權的消費(prerequisite consumption)과 收益性 있는 投資案의 抛棄誘引(investment incentive)에 따른 복지의 손실, 노력의 회피 및 成果評價시에 재무정보의 왜곡으로 인한 손실 등이 있을 수 있다[Watts and Zimmerman, 1986, pp. 179-186].

경영자에게 富移轉의 가능성은 제공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경우로는 주주와 채권자와의 계약관계를 들 수 있다. 주주와 채권자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업이 부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 발생되기 때문에 負債의 契約費用이라 한다. 부채의 계약비용은 投資案危險의 移轉誘引과 收益性投資의 抛棄誘引에 따른 福祉損失 등이 있다[Watts and Zimmerman, 1986, pp. 186-191].

합리적 기대 가설에 따라 투자자나 채권자는 앞에서 열거한 경영자의 도덕적 위험을 합리적으로 기대 또는 예상하고 이를 그들의 의사결정에 반영하여 경영자의 企業價值 減少行爲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경영자에게 부담시키는 價格防禦(price protection)를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합리적 기대에 의하여 경영자의 기업 가치 감소행위로 인한 비용을 경영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따라서 경영자는 이러한 계약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그 하나의 방안으로 外部監查의 고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합리적 기대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예상을 어떤 經濟的 模型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형성하며, 이를 기초로 의사결정한다는 가설이다. 이때,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관찰한 것만을 토대로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된 현재의 모든 정보와 지식까지 감안하여 예상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가능한 한 가장 效率的인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기대가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각 經濟主體들이 예상을 형성함에 있어 과거의 經驗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재 입수할 수 있는 관련정보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는 점이다. 합리적 기대가설이 주장하는 바는 각 개인들이 관련정보를 입수·처리함으로써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限界收益이 그에 따른 限界費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정보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信號理論에 의하면 경영자가 외부감사를 고용하는 것은 수임인(경영자)과 위임인(투자자와 채권자 등)간의 정보불균형에서 초래되는 계약비용 또는 기업가치의 감소를 줄이기 위한 경영자의 信號行爲로 볼 수 있다. 정보불균형에 의한 경영자의 도덕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수치를 이용한 각종의 계약이나 규제를 도입할 경우에 이러한 계약이나 규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의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 경우 경영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으려는 유인을 갖게 되며, 주주들과 체결한 成果誘引報酬를 높이거나 주가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을 과대공시할 수도 있다. 이것은 질이 나쁜 주식을 갖는 기업이 품질이 나은 기업의 경영자보다 시장에 주식을 더 많이 네놓으려는 利己的 選擇을 야기할 수 있으나, 합리적 기대를 하는 시장은 결국 평균적인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방어를 하게 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주주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스스로 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기를 拘束하거나 주주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補償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스스로 會計監查를 받는다든지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다든지 의사결정에 대한 계약조항을 두는 등이 自己拘束活動의 예가 된다. 경영자의 이러한 활동은 道德的 危險에 따르는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즉 계약비용 감소에 대한 信號傳達로 볼 수 있다.

3. 研究假說의 導出

앞의 이론적 검토에서 경영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이해갈등에서 초래되는 비용과 이로 인한 기업가치의 감소를 줄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고용(수요)하려는 유인을 갖는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경영자들의 外部監查 雇傭誘引이 「外監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규제환경에서는 경영자들의 외부감사에 대한受容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상과 같은 이론을 배경으로 경영자들의 감사수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설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의 주된 관심은 기업의 有效法人稅率이

외부감사 고용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의 외부감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의 효과도 정식적인 가설로 설정하여 이들 변수의 효과를 統制하기로 한다.

연구가설은 크게 ① 외부감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줄이는 데 외부감사가 도움이 되는 정도, 즉 監查效益이 경영자의 監查受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과, ②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의 상대적인 크기, 즉 기업의 契約 및 規制費用이 경영자의 감사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로 구분할 수 있다.

(1) 監查效益이 監查受容에 미치는 影響

규제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고용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경우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지원에 수반되는 정보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외부감사의 고용이 재무제표 신뢰성의 대용치가 되어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되기 때문이다. 法人稅法에서는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세무조정에 의해 세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에는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은 외부감사를 받음으로써 빈번한 稅務調查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규제자들은 감사보고서 자체를 검토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데, 이는 감사보고서가 기업의 각종 보고서에 信賴性을 부여함으로써 규제자는 情報蒐集費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통제에 있어서도 기업들은 감사를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요율은 적정하게 책정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기업측 주장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수집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정치적 위험을 낮출 수 있게 된다.

H1 : 세무관련 監查效益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外部監查에 대한 受容이 높다.

또한, 기업이 외부감사를 고용함으로써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증받을 경우 주식발행과 외부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效益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주식과 채권의 發行價格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상장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가격의 산정과 관련하여 證券監督院과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증권발행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주식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음으로써 株主總會에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주장할 수 있어 경영자의 수탁책임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이의처분이나 투자계획 등 각종 경영정책에 대하여 주주들로부터 보다 원만한 동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아 이자율, 담보조건 등에서 보다 유리한 차입조건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회사채의 발행이나 은행차입에 있어서 지급보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식이나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있어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러한 監査效益은 경영자의 監査受容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이러한 감사효익을 높이 평가하는 경영자일수록 더 높은 감사수용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H2: 주주관련 監査效益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外部監査에 대한 受容이 높다.

H3: 부채관련 監査效益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外部監査에 대한 受容이 높다.

기업규모가 확대되고 환경의 不確實性과 기업활동의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조직이 垂直性・水平의 分化될 경우에는, 기업내부에서도 상・하위경영층간의 계약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이 경우에 회사자산의 유용가능성을 비롯하여 성과측정치의 과대보고 등 하위경영자들의 도덕적 위험가능성은 조직의 효율성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部門別 成果測定과 관련하여 경영층간에 내재하는 정보불균형 문제는 최고경영자가 외부감사인을 고용하려는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감사효익을 높게 평가하는 경영자일수록 보다 높은 감사수용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H4: 統制관련 監査效益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外部監査에 대한 受容이 높다.

(2) 契約 및 規制費用이 監査受容에 미치는 影響

조세기관과의 갈등의 소지는 기업의 현금지출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지출액의 부담, 즉 유효법인세율이 높을수록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법인세부담율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가 높은 법인세부담에 따르는 정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외부감사를 고용할 유인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외부감사가 강제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더 수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H5: 法人稅부담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일수록 外部監査에 대한 受容이 높다.

계약 및 규제비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업의 규모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계약관계의 다양성은 증가한다. 둘째, 기업규모가 대형화할수록 주주나 채권자와 같은 위임인들의 不在化 傾向이 확대되기 때문에 위임인이 경영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셋째, 기업규모가 클수록 경영자가 외부주주나 채권자에 비해 재무정보 생산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커지며 이에 따른 정보불균형 문제는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기업의 내부통제측면, 즉 경영계층간의 정보불균형에 따른 내부계약비용은 기업규모에 따라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섯째,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자의 잠재적인 富移轉 금액의 크기, 즉 계약비용의 절대적인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企業規模의 효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유도할 수 있다.

H6: 기업의 規模가 클수록 경영자의 外部監査에 대한 受容이 높다.

상장법인과 비상장기업은 여러가지 면에서 계약 및 규제비용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그 근거로는, 첫째 이러한 기업유형은 소유권의 분산정도를 대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둘째, 이러한 기업구분은 기업의 規模와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대변해 주는 척도가 된다. 마지막으로, 公的監理에 의한 규제수준의 정도가 기업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이상과 같은 기업유형과 계약 및 규제비용간의 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유도할 수 있다.

H7: 상장기업의 경영자는 비상장기업의 경영자에 비해 外部監査에 대한 受容이 높다.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그 정치적인 위협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재벌기업의 폐해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회계정보를 기초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總資產을 기준으로 재벌기업의 민간방송사에 대한 주식 출자를 금지한다든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을 제한하는 것 등은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경우 재벌기업은 특히 계열사간의 内部去來 등을 통하여 회계자료를 오도하려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이러한 재벌기업 경영자들의 逆機能的인 行爲를 예상하여 이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재벌기업군에 대하여 結合財務諸表의 작성을 의무화한 것은 그 한 예이다. 결국, 재벌기업의 경영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감사를 수용함으로써 이러한 규제로 초래될 수 있는 비용을 회피하려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H8: 財閥그룹에 소속된 기업은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해 外部監査의 受容이 높다.

Smith와 Warner[1979]는 주주와 채권자간의 잠재적인 이해충돌의 주요한 원천으로 請求權의 稀釋化 위험, 配當金의 過大支給 위험, 투자안의 변경 가능성, 투자의 회피위험 등을 들고 있다. 이 외에도 경영자의 情報歪曲誘引을 추가할 수 있다. 경영자의 도덕적 위험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부채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또는 경영자 스스로 이러한 부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도덕적 위험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려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경영자는 정보를 왜곡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어떤 기업의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의 고용과 같은 保證契約을 제시하는지는 이해관계의 심각성, 즉 계약비용의 크기에 의존하며, 이로부터 경영자들의 監査受容과 기업

의 부채구조와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9: 負債依存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일수록 外部監査에 대한 受容이 높다.

V. 實證分析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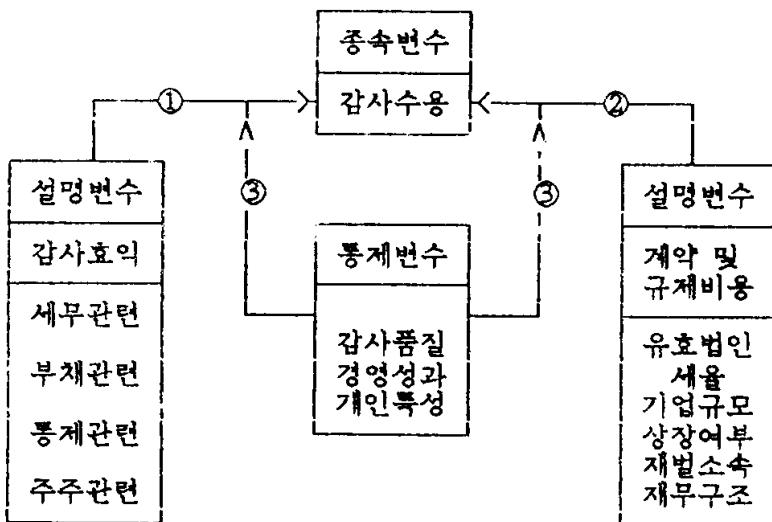
1. 研究模型

우선, 제 3 장, 제 4 절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기업경영자들의 감사수용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설들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들 가설들을 보다 타당성있게 검증하기 위하여 統制할 필요가 있는 변수들을 확인하여 이를 분석에 고려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기로 한다.

〈그림 1〉은 앞에서 제시한 10가지 연구가설과 3가지 통계변수를 모형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림에서 실선 ①은 외부감사와 관련된 4가지 利害集團과 관련하여 경영자가 평가하는 監査效益이 경영자의 감사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설 1, 2, 3, 및 4를 도시한 것이다. 실선 ②는 기업의 계약 및 규제비용이 경영자의 감사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가설 5, 6, 7, 8, 그리고 9가 여기에 해당한다.

실선 ③은 설문조사에서 경영자가 평가하는 감사품질, 기업의 경영성과, 그리고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감사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감사효익과 계약 및

〈그림 1〉 研究模型



규제비용이 감사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타당성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는 변수들이다.

2. 設問構成 및 變數의 定義

설문내용은 〈표 2〉와 같이 구성된다[김평기, 1992].

(1) 監查受容

의견자료를 요인분석하여 외부감사의 수용을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요인에 대한 要因點數와 함께 설문서의 12개 질문문항 중에서 종합적이고 결론적이라고 볼 수 있는 문항 12의 응답결과를 監查受容의 측정치로 이용하기로 한다.

(2) 監查效益

株主관련 監查效益은 설문문항 4, 負債관련 감사효익은 문항 9, 統制관련 감사효익은 문항 11, 그리고 세무관련 감사효익은 문항 3을 이용하여 각각 리커트 5단계척도로 측정한다.

〈표 2〉 設問構成

구 분	문 항	기 호	설 문 내 용
감사효익	주주관련	4	AUD _{si}
	부채관련	9	AUD _{br}
	통제관련	11	AUD _{it}
	세무관련	3	AUD _{tx}
감사수용	감사비용	2	AUD _{fe}
		5	AUD _{cm}
		8	AUD _{ob}
감사품질		7	AUD _{pr}
		10	AUD _{id}
일반의견			適格性 : 전문지식과 감사능력
			獨立性 : 독립성과 재무정보의 신뢰성
		1	AUD _{re}
		6	AUD _{op}
		12	AUD _{cb}
			이해관계자에 대한 社會的 責任
			適正意見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효과
			효익 - 비용분석에 의한 경제적 평가

(3) 契約 및 規制費用

1) 有效法人稅率

유효법인세율은 앞에서 설명한 세가지 측정방법 중에서 총이익 법인세율과 회계적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방법을 대체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text{ETRP} = \text{장부상 법인세액} / \text{법인세차감전 순이익}$$

$$\text{ETRPD} = \text{장부상 법인세액} / (\text{법인세차감전 순이익} + \text{감가상각비})$$

$$\text{ETRO} = \text{장부상 법인세액} / \text{영업이익}$$

ETROD=장부상 법인세액/(영업이익+감가상각비)

ETRG =장부상 법인세액/매출총이익

ETRGD=장부상 법인세액/(매출총이익+감가상각비)

여기에서 장부상 법인세액은 기업의 당기부담분 법인세액에 대한 근사치로 이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移延法人稅制度가 도입되지 않아 과세표준과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一時的 差異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무신고자료를 참조하여야 하나 이는 자료수집상의 한계가 있다.

2) 上場여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구분은 質的變數로서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모형에서는 이를 기호화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더미코딩을 이용하기로 한다.

3) 企業規模

기업 규모는 log(총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용하기로 한다[Palmrose, 1984].

4) 財閥企業

제별그룹 소속여부는 1990년도 말에 총자산을 기준으로 국내 100대 계열그룹에 소속된 기업은 1, 그렇지 않은 기업은 0으로 기호화한다.

5) 財務構造

負債契約費用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율들을 이용한다.

장기부채비율=(장기부채의 장부가액/총자산) * 100

단, 총자산=총자산 장부가액 ; 장기부채=고정부채—부채성충당금 및 이연부채

회사채비율=(회사채의 장부가액/총자산의 장부가액) * 100

차입금의존도=(차입금의 장부가액/총자산의 장부가액) * 100

단, 차입금=회사채+차관+기타의 장단기차입금

부채비율=(총부채의 장부가액/자기자본의 장부가액) * 100

금융비용부담율=(금융비용/매출액) * 100

단, 금융비용=지급이자 및 할인료+회사채이자+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4) 統制變數

1) 經營成果

총자산이익율=순이익/총자산 장부가치

2) 監查品質

외부감사의 품질은 감사인의 適格性과 獨立性으로 구성되며, 이는 각각 설문문항 7(적격

성)과 설문문항 10(독립성)에 대한 경영자들의 5 단계척도 응답을 기초로 측정한다.

3) 個人特性

근무직위=1(대리, 과장)	근속년수=1(2년 미만)
2(차장, 부정)	2(2년~5년)
3(이사, 임원)	3(6년 이상)

3. 資料蒐集

의견조사는 1991년도에 편집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最高經營者課程 총동창회 명부에서 제 1기(1976년 8월 수료)부터 32기(1991년 12월 수료예정)에 이르는 총 1,801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표 3>과 같은 표본추출과정을 거쳐 508개사에서 근무하는 670명의 회원을 추출하여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의 670명의 경영자 중에서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256개사(상장기업 114, 등록기업 82, 일반기업 60)에 근무하는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우송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4. 統計分析方法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통계방법으로는, 우선 의견자료로부터 감사수용에 대한 측정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要因分析을 이용하며, 설문응답의 信賴度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검증을 적용한다. 경영자의 감사수용과 관련한 10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주된 검증방법으로 이용한다.

앞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모형을 回歸等式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標本抽出節次

회원총원(제 1기 ~32기)	1,801명
자료부족(이민 등)으로 근무회사 확인불가	(150)
주식회사 이외의 근무처	(416)
주식회사 근무	1,235명
근무회사 퇴직	(35)
『의 감법』 비대상기업	(530)
『의 감법』 대상기업 근무	670명
동일한 회사 근무	(166)
『의 감법』 대상기업 2개사 임원겸임	4
조사대상 종표본기업수	508개사
회사유형별 분류:	
상장기업	304명
등록기업	206
일반기업	160
	670명
	198개사
	148
	140
	496개사

(1) 監查效益分析

$$\text{AUD}_i = \beta_0 + \beta_1 \text{AUD}_{tx} + \beta_2 \text{AUD}_{st} + \beta_3 \text{AUD}_{br} + \beta_4 \text{AUD}_{it} + \beta_5 \text{POS}_i + \beta_6 \text{CAR}_i + \beta_7 \text{AUD}_{pr} + \beta_8 \text{AUD}_{id} + \mu_i$$

AUD : 경영자의 감사수용(요인점수—AUD_{fs}, 문항 12-AUD_{cb})

AUD_{tx} : 세무관련 감사효익

AUD_{st} : 주주관련 감사효익

AUD_{br} : 부채관련 감사효익

AUD_{it} : 통제관련 감사효익

POS : 응답자 직위

CAR : 응답자의 근속년수

AUD_{pr} : 감사인의 적격성

AUD_{id} : 감사인의 독립성

(2) 財務指標分析

$$\text{AUD}_i = \beta_0 + \beta_1 \text{ETR}_i + \beta_2 \text{ETR}_i * \text{ASS}_i + \beta_3 \text{ASS}_i + \beta_4 \text{SDL}_i + \beta_5 \text{BND}_i + \beta_6 \text{LNG}_i + \beta_7 \text{BOR}_i + \beta_8 \text{DEB}_i + \beta_9 \text{INT}_i + \beta_{10} \text{POS}_i + \beta_{11} \text{CAR}_i + \beta_{12} \text{ROI}_i + \mu_i$$

AUD: 경영자의 감사수용(요인점수—AUD_{fs}, 문항 12-AUD_{cb})

POS : 응답자 직위

CAR: 응답자의 근속년수

ETR : 유효법인세율

ETR * ASS: 유효법인세율과 기업규모의 상호작용변수

ASS : log(자산규모)

GRP: 재벌기업 소속여부

BND : 회사채비율

LNG: 장기부채비율

BOR: 차입금의존도

DEB : 부채비율

INT: 금융비용부담율

ROI: 총자본이익률

SDL : 상장여부

VI. 實證分析의 結果

1. 資料의 記述統計

郵送方法에 의한 설문서의 발송과 회수는 1991년 10월 중에 이루어졌으며, <표 4>는 우송조사에서 본 연구와 관계된 설문서의 회수율을 요약한 것이다.

<표 5>는 12개 설문문항에 대한 리커트 5 단계척도에서의 응답평균을 기업유형별로 구분하여 요약한 것이며, <표 6>에서는 기업이 외부감사를 고용할 경우에 4가지 이해집단과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감사효익에 대한 경영자들의 응답평균의 집단별 순위를 기업유형별로 요약한 것이다.

<표 7>의 有效法人稅率과 <표 8>의 재무변수들의 표본평균은 의견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경영자가 근무하는 80개 기업에 대한 평균값을 보이고 있으며 韓國信用評價(株)에서 발간한

〈표 4〉 설문서 회수율 요약

구 분	개 수
발 송	256
반 송	3
소 계	253
회 수	83
회 수 율(%)	(32.8)
제 외	3
이 용	80
이 용 율(%)	(31.6)

〈표 5〉 설문문항의 응답평균

문 항	합 계	상 장	등 록	일 반
사회적 책임(AUD _{re})	3.88	4.35	3.48	3.53
수수료 등 부담(AUD _{fe})	2.89	3.17	1.68	1.58
세무마찰 감소(AUD _{rx})	2.93	3.13	2.76	3.05
주식발행 도움(AUD _{st})	2.65	3.18	2.44	1.89
경영기밀 누설(AUD _{cm})	4.32	3.27	3.16	3.79
적정의견 이미지(AUD _{op})	3.99	4.30	3.76	3.53
감사인 격격성(AUD _{pr})	3.45	3.53	3.16	3.79
정상업무 지장(AUD _{ob})	4.02	2.95	3.24	2.79
부채조달 도움(AUD _{br})	3.41	3.30	3.80	3.16
감사인 독립성(AUD _{id})	3.73	3.88	3.40	3.79
내부통제 보완(AUD _{tt})	3.41	3.38	3.32	3.74
비용—효익 분석(A _{cb} UD)	3.51	3.83	3.52	2.95
표 본 수	80	40	25	19

〈표 6〉 監査效益에 대한應答平均의順位

효 익	합 계	상 장	등 록	일 반
부채 관련(AUD _{br})	①	①	①	②
통제 관련(AUD _{tt})	①	②	②	①
조세 관련(AUD _{rx})	③	④	③	③
주주관련(AUD _{st})	④	③	④	④

『韓國企業財務總覽』(1991년)에서 수집하였다.

ETRP = 장부상 법인세액/법인세차감전 순이익

ETRPD = 장부상 법인세액/(법인세차감전 순이익 + 감가상차비)

ETRO = 장부상 법인세액/영업이익

〈표 7〉 유효세율 표본평균

(단위 : %)

변수	전체	상장	등록	일반
ETRP	36.24	46.18	36.16	14.14
ETRPD	23.16	20.64	20.33	32.64
ETRO	19.89	18.90	20.36	21.57
ETROD	13.11	11.21	14.89	15.09
ETRG	8.86	12.46	7.20	2.68
ETRGD	6.37	8.51	6.12	1.63
표본수	78	38	23	17

ETROD=장부상 법인세액/(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ETRG =장부상 법인세액/매출총이익

ETRGD=장부상 법인세액/(매출총이익 + 감가상각비)

〈표 7〉에서는 표본기업의 有效法人稅率의 평균치를 6가지 대체적인 측정방법별 그리고 상장기업, 등록기업, 일반기업별로 요약한 것이다. 표에서는 6가지 대체적인 측정방법별로 6.37%에서 36.24%의 유효법인세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기업유형별로 體系的인 分布를 보이고 있는데 법인세차감전 순이익기준(ETRP), 매출총이익기준(ETRG, ETRGD)에서는 상장기업, 등록기업, 그리고 일반기업 순으로 유효세율의 크기를 보이며 영업이익기준(ETRO, ETROD)에서는 반대로 일반기업, 등록기업, 그리고 상장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재무지표의 표본평균

(단위 : %)

변수	합계	상장	등록	일반
총자산 ¹⁾ (ASS)	11.34	12.34	10.58	10.15
총자산이익률(ROI)	1.99	2.18	1.95	1.38
회사채비율(BND)	6.57	9.64	6.36	—
장기부채비율(LNG)	25.81	29.16	22.90	22.27
차입금비율(BOR)	38.14	35.81	45.26	33.73
부채비율(DEB)	353.103	254.61	421.81	480.28
금융비용비율(INT)	6.13	5.45	5.08	9.06
표본수	78	38	23	17

1) ASS의 漢定單位는 총자산에 대한 自然代數값임.

2. 要因分析 및 信賴性 分析

(1) 意見資料의 要因分析

〈표 9〉는 80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로서 축약된 상관관계 행렬의 고유값에 대한 누적설명비율 1을 기준으로 총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9〉 要因分析의 결과

설 문 문 항	회 전 전			회 전 후			공통분산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1	요인 2	요인 3	
사회적 책임 (AUD _{re})	0.71	-0.08	0.01	0.68	0.21	0.03	0.51
수수료 등 부담 (AUD _{fe})	0.46	-0.31	-0.13	0.55	-0.13	-0.03	0.32
세무마찰 감소 (AUD _{ts})	0.64	-0.00	-0.18	0.61	0.20	-0.17	0.44
주식 발행 도움 (AUD _{st})	0.63	-0.20	0.09	0.64	0.10	0.15	0.44
경영기밀 누설 (AUD _{cm})	0.09	0.23	-0.34	0.04	0.14	-0.39	0.17
적정 의견 이미지 (AUD _{op})	0.76	-0.02	0.09	0.70	0.31	0.09	0.59
감사인 적격성 (AUD _{pr})	0.51	0.43	-0.10	0.31	0.55	-0.23	0.45
정상업무 지장 (AUD _{ob})	0.39	-0.24	-0.25	0.48	-0.13	-0.17	0.28
부채조달 도움 (AUD _{br})	0.50	-0.23	0.40	0.50	0.10	0.41	0.43
감사인 독립성 (AUD _{id})	0.58	0.44	0.11	0.35	0.65	-0.03	0.54
내부통제 보완 (AUD _{it})	0.63	0.44	0.10	0.40	0.66	-0.04	0.60
비용-효익 분석 (AUD _{cb})	0.87	-0.25	-0.10	0.91	0.09	-0.01	0.84
고 유 값 설 명 도				4.24	0.95	0.41	5.60
				35.33	7.92	3.42	46.67

감사수용에 대한 요인점수는 회전후의 요인분석 결과 제 1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 중에서, 4가지 이해집단과 관련한 감사효익 문항(AUD_{ts}, AUD_{st}, AUD_{br}, 그리고 AUD_{it})을 제외한 AUD_{cb}, AUD_{re}, AUD_{fe}, AUD_{op}, AUD_{ob}, AUD_{id} 등 6 문항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AUD_{fs} = 0.68AUD_{re} - 0.55AUD_{fe} + 0.70AUD_{op} - 0.48AUD_{ob} + 0.35AUD_{id} + 0.91AUD_{cb}$$

단, AUD_{fs}: 요인점수

AUD_{re}: 사회적 책임에 의한 감사수용

AUD_{fe}: 감사경비 및 수수료 부담과 관련한 감사수용

AUD_{op}: 적정감사의견의 이미지효과와 관련한 감사수용

AUD_{ob}: 정상업무에 대한 지장과 관련한 감사수용

AUD_{id}: 감사인의 독립성 평가와 관련한 감사수용

AUD_{cb}: 외부감사의 효익-비용분석에 따른 감사수용

(2) 應答의 信賴性 分析

〈표 10〉 Cronbach α 검증결과

	문 항 전 체	제 1 요인 문 항	표 본 수
α 계 수	0.85	0.79	80
문 항 수	12	6	

〈표 10〉에는 12개 문항 전체와 감사수용 요인을 구성하는 6개 문항(즉, AUD_{cb} , AUD_{re} , AUD_{je} , AUD_{op} , AUD_{ob} , 그리고 AUD_{id})에 대하여 각각 0.85, 0.79의 α 계수를 보이고 있어, 두 가지 문항집단에서 매우 높은 응답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稅務관련 監查效益의 影響分析

본 절부터는 앞에서 도출한 9가지의 假說을 검증하기 위하여 回歸分析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요약·검토하기로 하자.

우선, 본 절에서는 주주, 채권자, 경영계층, 그리고 세무기관 등 4가지 利害集團과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감사효익이 감사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4가지 가설(감사효익가설 1~4)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1) 相關關係分析

4가지 설명변수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회귀분석에서 설명변수 상호간의 상관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多衆共線性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자. 〈표 11〉은 4가지 감사효익, 즉 세무관련 감사효익(AUD_{ts}), 주주관련 감사효익(AUD_{st}), 부채관련 감사효익(AUD_{br}), 그리고 통제관련 감사효익(AUD_{it}) 간의 Pearson 상관계수와 제수의 有意水準을 요약한 것이다. 도표에서는 부채관련 감사효익(AUD_{br})과 주주관련 감사효익(AUD_{st}) 간의 상관계수 0.42를 제외하고 다른 변수들간에는 전반적으로 낮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6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변수 상호간의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으며, 따라서 감사효익과 감사수용간의 관계에 대한 4가지 가설은 제 4 장의 분석모형에서 제시한 回歸模型을 이용하여 검증할 수 있다.

(2) 回歸分析의 결과

〈표 12〉에는 4가지 감사효익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가 감사수용에 미치는 영향(가설 1~4)

〈표 11〉 說明變數간의 피어슨 相關關係

	AUD_{ts}	AUD_{st}	AUD_{br}	AUD_{it}
AUD_{ts}	1.00			
	0.00			
AUD_{st}	0.16	1.00		
	0.02	0.00		
AUD_{br}	0.09	0.42	1.00	
	0.17	0.00	0.00	
AUD_{it}	0.29	0.22	0.20	1.00
	0.00	0.00	0.00	0.00

1) 위의 변수기호의 의미는 〈표 2〉를 참조하기 바람.

2) 도표에서 위의 수치는 상관계수를 그리고 아래의 수치는 이에 대한 유의확률을 나타낸다.

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모형과 이에 대한 검증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는 감사수용(AUD_i)이며 이는 앞 장의 변수정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의 고용에 수반되는 效益과 費用을 고려한 綜合的인 설문 문항인 AUD_{cb} (AUD_{cb} 模型)과 본 장, 제 2절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감사수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한 6개 문항(AUD_{cb} 를 포함)을 이용하여 산출한 요인점수 AUD_{fs} (AUD_{fs} 模型)를 각각 대용변수로 이용한 것이다. 표에는 AUD_{cb} 모형과 AUD_{fs} 모형 각각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표 12〉에서 우선 회귀모형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AUD_{cb} 모형과 AUD_{fs} 모형의 R^2 가 각각 61%, 63%를 보이고 있어 두 회귀모형 모두 說明力이 높으며 F값도 각각 13.55, 14.74로서 두 회귀모형 모두 0.01의 유의수준에서 감사수용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4가지 설명변수들의 回歸係數와 이에 대한 t값을 보면, 4가지 감사효익, 즉 세무관련 감사효익(AUD_{tx}), 주주관련 감사효익(AUD_{st}), 부채관련 감사효익(AUD_{br}), 그리고 통제관련 감사효익(AUD_{tt})에 있어서 모두 제 3장의 가설에서 예상한 방향(+)으로 감사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세무관련 감사효익(AUD_{tx}), 주주관련 감사효익(AUD_{st}), 부채관련 감사효익(AUD_{br}), 그

〈표 12〉 監査效益의 影響分析

회귀모형	$AUD_i = \beta_0 + \beta_1 AUD_{tx} + \beta_2 AUD_{st} + \beta_3 AUD_{br} + \beta_4 AUD_{tt} + \beta_5 POS_i + \beta_6 CAR_i + \beta_7 AUD_{pr} + \beta_8 AUD_{id} + \mu_i$					
종속변수 독립변수	예상기호	AUD_{fs}		AUD_{cb}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설명변수						
AUD_{tx}	+	0.91	4.08***	0.38	4.37***	
AUD_{st}	+	0.79	3.89***	0.36	4.54***	
AUD_{br}	+	0.44	2.19**	0.15	1.88**	
AUD_{tt}	+	0.47	1.65*	0.15	1.40*	
통제변수						
POS		-0.25	-1.24	-0.06	-0.71	
CAR		-0.46	-1.02	-0.18	-1.04	
AUD_{pr}		0.23	0.77	0.10	0.89	
AUD_{id}		0.12	0.37	-0.12	-0.91	
분산분석						
표본수		78		78		
F값		14.74***		13.55***		
R^2		0.63		0.61		

1) *, **, ***는 $\beta > 0$ 의 單側檢證에서의 유의수준으로 각각 10%미만, 5%미만, 1%미만에서 有意함을 나타낸다.

리고 통제관련 감사효익 (AUD_{it})의 회귀계수에 대한 t 값의 유의수준을 보면, AUD_{cb} 모형과 AUD_{fs}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각각 有意水準 0.01, 0.01, 0.05 그리고 0.10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설 1과 2는 0.01, 가설 3은 0.05, 그리고 가설 4는 0.10의 유의수준에서 수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AUD_{cb} 모형과 AUD_{fs} 모형에서 일관성있게 얻을 수 있어 분석결과가 타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설 1에서 4와 관련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제 1절, <표 5>의 설문분항의 응답평균과 <표 6>의 4가지 감사효익별 응답평균의 順位와 비교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표 5>에서는 稅務관련 감사효익 (AUD_{tx}), 株主관련 감사효익 (AUD_{st}), 부채관련 감사효익 (AUD_{br}), 그리고 통제관련 감사효익 (AUD_{it})에 대한 경영자들의 응답평균이 각각 2.93, 2.65, 3.41, 3.41로서 부채와 통제관련 효익 (AUD_{br} , AUD_{it})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應答平均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세무와 주주관련 감사효익 (AUD_{tx} , AUD_{st})이 경영자들의 감사수용을 더 유의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평균과 회귀분석에서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稅務와 관련한 감사효익이 감사수용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會計實務가 稅務會計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절에서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기업간의 세무관련 규제비용의 차이가 기업의 외부감사 고용유인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주주와 관련한 감사효익이 감사수용을 높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이 높은 適正監查意見을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內部統制 및 負債調達과 관련한 감사효익 (AUD_{it} , AUD_{br})에 있어서는, 비록 법적인 규제를 받는 환경에서 경영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평균을 보이고 있더라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내부통제를 보완하거나 또는 부채조달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독립적인 외부의 감사인을 ‘週期的’으로 고용할 유인은 주주관계나 세무문제와 관련한 감사고용유인에 비하여 더 낮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부채와 관련한 감사효익이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감사수용에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부감사외에도 擔保制度나 人事交流 등 부채계약비용을 낮추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회귀분석에는 응답자의 개인특성(POS, CAR)과 감사품질에 대한 경영자들의 평가(AUD_{pr} , AUD_{id}) 등이 감사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있는데, 비록 이들 변수들이 유의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더라도 이들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분석의 타당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직위(POS)와 근속년수(CAR)는 두 회귀模型에서 모두 (-)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으며 係數의 t값도 다소 크게 나타나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有效法人稅率의 影響分析

본 절에서는 기업의 계약 및 규제비용수준이 경영자의 監查受容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1) 相關關係分析

〈표 13〉을 보면 설명변수 상호간에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산규모(ASS)는 회사채비율(BND)과 높은 상관계수(0.33)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재무구조를 나타내는 부채비율(DEB), 금융비용부담율(INT), 회사채비율(BND), 장기부채비율(LNG), 그리고 차입금비율(BOR) 상호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60을 초과하는 경우에 多衆共線性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기준에 따른다면 변수들은 하나의 회귀모형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企業規模와 有效稅率간의 關聯性

〈표 14〉에서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相關係數가 유효세율의 6가지 대체적인 측정방법 모두 0.15 이하를 보이고 있어 상관계수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효법인세율과 총자산이익율, 회사채비율, 장기부채비율, 차입금비율, 부채비율, 그리고 금융비용비율 등 재무변수들과의 상관계수도 0.35(총자산이익율과 ETROD간의 상관계수) 이하로 나타나, 유효법인세율의 대체적인 측정방법에 관계없이 유효법인세율을 다

〈표 13〉 財務指標간의 피어슨 相關關係

	ASS	BND	LNG	BOR	DEB
BND	0.33 (0.00)				
LNG	0.22 (0.00)	0.26 (0.00)			
BOR	0.13 (0.06)	0.28 (0.00)	0.49 (0.00)		
DEB	-0.01 (0.94)	0.03 (0.63)	0.39 (0.00)	0.47 (0.00)	
INT	0.04 (0.53)	0.14 (0.03)	0.44 (0.00)	0.41 (0.00)	0.22 (0.00)

1) 위의 변수기호의 의미는 6장, 4절 통계분석방법을 참조하기 바람.

2) 도표에서 위의 수치는 상관계수를 그리고 아래의 수치는 유의확률임.

른 재무변수와 함께 의무감사 고용유인의 설명변수로 동일한 회귀모형에서 검증할 수 있다.

특히, 企業規模와 有效稅率간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유효세율(6가지 측정방법)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기업규모(자산총액 그리고 자산총액의 자연대수), 재벌 소속여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그리고 기업규모 재벌소속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검증하였으나 어느 변수도 통계적인 유의도를 보이지 못하였다.

$$ETR_i = \beta_0 + \beta_1 ASS_i + \beta_2 GRP_i + \beta_3 PRE_i + \beta_4 ASS * GRP_i$$

ETR_i : 표본기업의 유효세율(6가지 대체적인 측정방법 이용)

ASS_i : 표본기업의 자산규모(총자산 및 이에 대한 자연대수)

GRP_i : 재벌소속여부

PRE_i :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이러한 관계는 Zimmerman[1983]의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규모가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의 政治的 費用에 대한 代用變數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인세와 관련한 정치비용이 경영자의 외부감사 고용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효세율을 독립변수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관련성은 보다 세련된 研究設計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비록 유효세율이 기업규모와 비례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다른 어떠한 형태의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지, 본 연

〈표 14〉 유효세율과 재무지표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ETRP	ETRPD	ETRO	ETROD	ETRG	ETRGD
총 자 산(ASS)	0.13 (0.26)	-0.15 (0.20)	-0.10 (0.37)	-0.13 (0.25)	0.15 (0.19)	0.15 (0.19)
총자산이익률(ROI)	0.05 (0.69)	0.14 (0.22)	0.30 (0.01)	0.35 (0.00)	0.10 (0.39)	0.15 (0.18)
회사채비율(BND)	0.00 (0.98)	-0.05 (0.65)	-0.15 (0.20)	-0.15 (0.20)	0.12 (0.30)	0.12 (0.30)
장기부채비율(LNG)	0.28 (0.01)	-0.03 (0.77)	-0.03 (0.79)	-0.06 (0.62)	0.20 (0.08)	0.21 (0.06)
차입금비율(BOR)	0.05 (0.68)	-0.25 (0.03)	-0.27 (0.02)	-0.27 (0.02)	-0.01 (0.96)	0.02 (0.84)
부채비율(DEB)	-0.07 (0.52)	-0.04 (0.74)	-0.09 (0.44)	-0.01 (0.94)	-0.03 (0.77)	0.01 (0.91)
금융비용비율(INT)	-0.05 (0.68)	-0.16 (0.16)	-0.21 (0.07)	-0.21 (0.07)	0.02 (0.87)	0.00 (0.97)

1) 도표에서 위의 수치는 상관계수를 그리고 아래의 수치는 유의확률임.

2) 기호의 의미는 5장, 2절의 변수정의를 참조하기 바람.

구에서는 기업규모가 유효세율의 연속적인 척도의 대용변수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음을 뿐이다.

(3) 回歸分析 결과

〈표 15〉은 기업의 有效法人稅率(ETR)을 회귀모형에 포함하지 않은 다른 계약비용과 규제비용의 원천별로 재무지표를 대용변수로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며, 〈표 16〉과 〈표 17〉은 〈표 15〉의 회귀모형에 유효법인세율을 포함하여 분석한 것으로, 유효법인세율의 측정치로써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를 분모로 이용한 ETRO, ETROD와 이들 변수와 기업규모간의 相互作用變數를 각각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유효법인세율을 포함하지 않은 〈표 15〉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유효법인세율을 고려할 경우 회귀모형의 설명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ETRO의 효과를 반영한 〈표 16〉에서 설명도는 AUD_{fs}模型에서 37%에서 42%로 5% 증가하였으며 AUD_{cb}模型에서는 36%에서 37%로 증가하였다. 또한 ETROD의 효과를 고려한 〈표 17〉에서도 AUD_{fs}모형과 AUD_{cb}모형에서 각

〈표 15〉 契約 및 規制費用 影響分析(1)

회 귀 모 형	AUD _i = $\beta_0 + \beta_1 ASS_i + \beta_2 SDL_i + \beta_3 GRP_i + \beta_4 BND_i + \beta_5 LNG_i + \beta_6 BOR_i + \beta_7 DEB_i + \beta_8 INT_i + \beta_9 + \beta_{10} CAR_i + \beta_{11} ROI_i + \mu_i$					
	예상기호	AUD _{fs}		AUD _{cb}		
종 속 변 수		회 귀 계 수	t 값	회 귀 계 수	t 값	
설명변수						
ASS	+	1.08	3.45***	0.43	3.61***	
SDL	+	1.14	1.21	0.24	0.66	
GRP	+	-1.68	-1.68**	-0.74	-1.95**	
BND	+	8.67	1.70**	3.87	1.98**	
LNG	+	-0.600	-1.99**	-3.01	-2.61***	
BOR	+	0.04	1.66*	0.02	2.08**	
DEB	+	0.00	1.78**	0.00	1.26	
INT	+	0.11	2.29**	0.05	2.63***	
통제변수						
POS		-0.28	-0.93	-0.06	-0.55	
CAR		0.07	0.12	0.08	0.34	
ROI		0.15	1.77**	0.05	1.63*	
분산분석						
표 본		78		78		
F 값		3.59***		3.31***		
R ²		0.37		0.36		

1) *, **, ***는 $\beta > 0$ 의 單側檢證에서의 유의수준으로 각각 10% 미만, 5% 미만, 1% 미만에서有意함을 나타낸다.

〈표 16〉 契約 및 規制費用 影響分析(2)

회계 모형		$AUD_i = \beta_0 + \beta_1 ETRO_i + \beta_2 ETRO_i * ASS_i + \beta_3 ASS_i + \beta_4 SDL_i + \beta_5 BND_i + \beta_6 LNG_i + \beta_7 BOR_i + \beta_8 DEB_i + \beta_9 INT_i + \beta_{10} POS_i + \beta_{11} CAR_i + \beta_{12} ROI_i + \mu_i$					
종속변수	예상기호	AUD _{fs}			AUD _{cb}		
		회계계수	t	값	회계계수	t	값
설명변수							
ETRO	+	19.01		2.15**	5.64		1.64*
INTER ²⁾	+	-1.84		-2.24**	-0.52		-1.63*
ASS	+	1.39		4.12***	0.52		3.95***
SDL	+	1.62		1.68	0.32		0.85
GRP	+	-2.25		-2.16**	-0.81		-1.99**
BND	+	8.03		1.58	3.66		1.85*
LNG	+	-5.55		-1.85*	-2.96		-2.53***
BOR	+	0.04		1.60	0.02		2.00**
DEB	+	0.00		2.14**	0.00		1.40
INT	+	0.11		2.19**	0.05		2.53***
통제변수							
POS		-0.44		-1.42	-0.09		-0.72
CAR		-0.05		0.09	0.06		0.25
ROI		0.13		1.61	0.05		1.49
분산분석							
표본			78			78	
F 값			3.52***			2.87***	
R ²			0.42			0.37	

1) *, **, ***는 $\beta > 0$ 의 單側檢證에서의 유의수준으로 각각 10% 미만, 5% 미만, 1% 미만에서有意함을 나타낸다.

2) INTER는 ETRO*ASS로서 유효법인세율과 자산규모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반영한다.

각 42%, 38%의 설명도를 보임으로써 유효법인세율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각각 5%, 2%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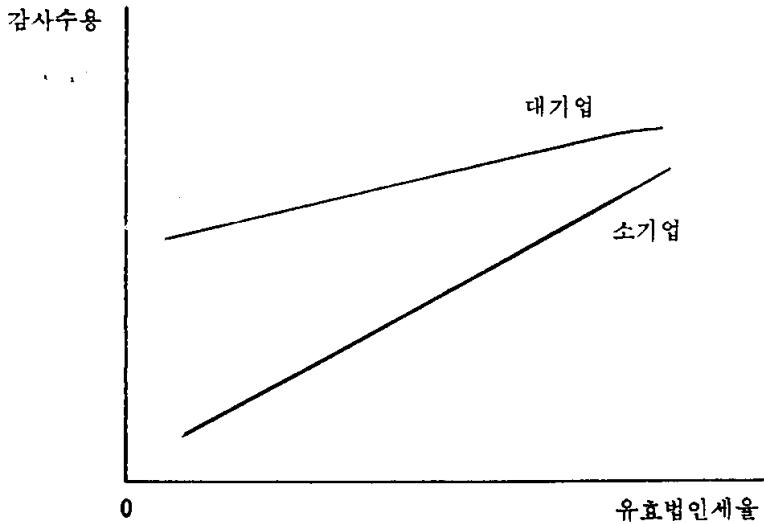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계약 및 규제비용을 반영하는 企業規模를 비롯한 재무변수들과 유효법인세율간의 相關關係分析에서 알 수 있듯이 〈표 15〉의 독립변수들이, 법인세와 관련한 규제비용(유효법인세율)이 기업의 외부감사 고용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도 불구하고 〈표 15〉에서는 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16〉과 〈표 17〉에서 유효법인세율 및 상호작용변수가 감사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표 16〉에서는 有效法人稅率(ETRO), 그리고 유효법인세율과 기업규모의 相互作用變數(INTER)가 경영자의 외부감사 고용유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AUD_{fs}모형과 AUD_{cb}모형에서 ETRO와 INTER 모두 각각 0.05, 0.10의 유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표 17〉에서도 ETROD는 AUD_{fs}모형과 AUD_{cb}모형에서 모두 0.05의 유의수준에서 그리고 INTER 변수는 AUD_{fs}모형에서 0.05의 유의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비록 유의하지는 않더라도 AUD_{cb}모형에서도 높은 t값(-1.55)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설 5와 관련된 귀무가설은 기각되며 유효법인세율은 우리나라 기업경영자들의 외부감사 고용유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

〈표 16〉과 〈표 17〉에서는 자산규모와 유효법인세율의 상호작용변수(INTER)도 외부감사 고용유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ETRO와 기업규모와의 상호작용 변수는 AUD_{fs}모형과 AUD_{cb}모형에서 각각 0.05, 0.10의 유의수준에서 감사고용유인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리고 ETROD와 기업규모와의 상호작용변수는 AUD_{fs}모형에서 0.05 유의수준에서 역시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그림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유효법인세율이 감사고용유인에 미치는 효과는 기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며,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적은 기업에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외부감사를 고용하려는 더 큰 유인을 갖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림 2〉 상호작용변수의 효과



(2) 有效法人稅率(ETR)에 대한 다른 4가지의 대체적 측정치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으나 이들 측정치들에서는 비록 계수의 부호는 가설과 일치하나 t값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효법인세율이 外部監査의 雇傭誘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소 약하게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ETRG(D)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제한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ETRP(D)는 비경상적인 항목의 현금흐름효과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유효법인세율의 측정치로서 ETRO(D)보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표 17〉 契約 및 規制費用 影響分析(3)

회귀모형	$AUD_i = \beta_0 + \beta_1 ETROD_i + \beta_2 ETROD_i * ASS_i + \beta_3 ASS_i + \beta_4 SDL_i + \beta_5 BND_i + \beta_6 LNG_i + \beta_7 BOR_i + \beta_8 DEB_i + \beta_9 INT_i + \beta_{10} POS_i + \beta_{11} CAR_i + \beta_{12} ROI_i + \mu_i$					
종속변수	예상기호	AUD _{fs}		AUD _{cb}		
독립변수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설명변수						
ETROD	+	27.36	2.16**	8.24	1.68*	
INTER	+	-2.45	-2.20**	-0.67	-1.55	
ASS	+	1.36	4.07***	0.50	3.89***	
SDL	+	1.56	1.62	0.31	0.84	
GRP	+	-2.07	-1.99**	-0.72	-1.78*	
BND	+	8.57	1.70*	3.83	1.95**	
LNG	+	-6.30	-2.11**	-3.19	-2.75***	
BOR	+	0.04	1.75*	0.02	2.23**	
DEB	+	0.00	2.11**	0.00	1.28	
INT	+	0.11	2.31**	0.05	2.60***	
통제변수						
POS		-0.39	-1.28	-0.07	-0.57	
CAR		0.06	0.11	0.09	0.39	
ROI		0.13	1.59	0.04	1.38	
분산분석						
표본		78		78		
F 값		3.49***		2.92***		
R ²		0.42		0.38		

1) *, **, ***는 $\beta > 0$ 의 單側檢證에서의 유의수준으로 각각 10% 미만, 5% 미만, 1% 미만에서有意함을 나타낸다.

2) INTER는 ETROD*ASS로서 유효법인세율과 자산구조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반영한다.

다음에는 〈표 16〉을 중심으로 다른 재무변수의 효과에 대한 AUD_{fs} 모형과 AUD_{cb}모형의 분석결과를 검토하자. 설명변수들의 회歸係數를 보면, 재벌그룹 소속여부(GRP)와 장기부채비율(LNG)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의 경우 가설에서 예상한 기호와 일치하고 있다. 자산구조(ASS)의 경우 AUD_{fs}모형과 AUD_{cb}모형에서 모두 0.01의 유의수준에서 감사수용에(+)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수용이 높다 립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기업규모가 경영자의 감사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러한 결론은 대파는 Healy와 Lys[1986]의 연구(유의수준 0.05)에서도 확인되었으며, Chow[1982], Eichenseher와 Shields[1983] 등의 연구에서는 비록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기업규모와 감사수요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그 타당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감사수용이 크다는 것은 기업의 總計的인 契約 및 規制費用

水準이 높을수록 감사수용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나타내며, 따라서 앞 절의 기업유형과 마찬가지로 계약 및 규제비용의 원천별로 주주, 채권자, 경영계층, 또는 세무기관 등 구체적인 이해집단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의 연구가설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규모는 기업의 다양한 이해집단과의 利害葛藤水準을 총계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이해집단과 관련해서 기업의 계약 또는 규제비용이 경영자의 감사수용에 미치는 영향은 가설 5, 7, 8, 그리고 9의 검증결과를 통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재벌기업의 감사수용에 대한 가설 8과 관련하여서는 AUD_{fs} 모형과 AUD_{cb} 모형에서 회귀계수가 가설에서의 예상과 정반대의 부호로 나타났으며 t값의 유의수준도 0.0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財閥企業들이 규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가설이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와 재벌간 관계의 일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규제비용과 관련한 이러한 결과는 제 3 절의 監查效益分析에서 세무관련 효익이 감사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전혀 상반되는 것으로, 이는 규제비용은 그 원천에 따라 경영자들의 감사수용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의 재무구조에 따른 감사수용에 대한 가설 9는 AUD_{fs} 모형 또는 AUD_{cb} 모형에서 장기부채비율(LNG)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에서 對立假說을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AUD_{fs} 모형의 경우 부채비율(DET)과 금융비용부담율(INT) 등이 0.05의 유의수준에서 감사수용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UD_{cb} 모형에서는 금융비용부담율(INT)이 0.01의 유의수준에서 회사채비율(BND)이 0.10, 그리고 차입금비율(BOR)이 0.05 유의수준에서 각각 감사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립가설 9를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負債比率과 관련한 검증결과는 규제되지 않는 상황(미국의 1927년)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고용한다는 Chow[1982]의 분석결과(유의수준, 0.05)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監查品質이 높은 대형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Eichenseher와 Shields[1983]의 연구결과(유의수준, 0.05)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채비율, 즉 부채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외부감사를 고용할 유인이 크며, 따라서 보다 자발적으로 外部監查를 雇傭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長期負債比率(LNG)의 경우에는 가설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AUD_{fs} 모형과 AUD_{cb}

모형에서 각각 유의수준 0.10, 0.01에서 감사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부채비율에서 가설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이러한 결과는 Simunic과 Stein [1987], Palmrose[1984], 그리고 대형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는 기업과 소형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는 기업이 합併할 경우에 신설기업이 대형 회계법인을 계속 고용하는지를 분석한 Healy와 Lys[1986]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企業公開시에 대형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는지를 분석한 Simunic과 Stein(1984)의 연구결과에서는 장기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대형 회계법인을 선호한다는 결과(유의수준, 0.05)를 제시하고 있다.

V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契約理論과 情報理論을 배경으로, 외부감사가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과 마찬가지로 經濟財의 특성을 가지며 그 품질이 觀察可能하다는 전제하에, 정부규제가 아니더라도 시장기구의 기능에 의해 기업의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고용하려는 유인을 갖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시장기능에 의한 외부감사의 자발적인 수요가 존재할 수 있으며, 기업회계와 외부감사의 규제방향과 관련하여 이러한 市場機能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監查效益에 대한 4가지 가설의 검증결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자들이 주주, 세무기관, 채권자, 그리고 기업내의 각 경영계층간의 이해갈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용을 줄이는데 외부감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외부감사의 고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채권자보호나 기업의 내부통제보완 목적보다는 稅務機關과 株主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으려는 유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有效法人稅率은 기업의 외부감사 고용유인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세 효과를 제외한 기타의 계약 및 규제비용변수가 경영자의 감사수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규모가 크고 부채의존도(장기부채의 효과는 제외)가 높아 金融費用에 대한 부담이 큰 기업일수록 외부감사의 고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財閥企業의 경우에는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낮은 외부감사 수용을 보이고 있으며, 상장기업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유의한 감사고용유인의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자의 경우에는 기업규모효과를 통제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자들이 기업의 계약 및 규제비용의 수준에 따라 외부감사를 고용하

려는 유인을 갖을 수도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示唆하고 있다. 첫째, 계약 및 정보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경영자에게 외부감사 고용유인을 제공하는 시장기구가 존재한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외부감사의 공급자인 감사인들간에 감사품질이 差別化될 경우 경영자들은 시장기능에 따라 고품질 감사를 수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연구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規制環境’에서 시장기능에 따른 외부감사의 고용유인을 다룬 데 있을 것이다. 특히, 규제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수용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자발적인 감사 고용유인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규제기능은 외부감사와 관련된 시장기능을 반영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자들로부터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결과 나타난 경영자들의 감사수용은 市場役割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둘째, 응답자가 기업을 代表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실제로 응답자들이 회계부서의 책임자로서 회계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으며 또한 최고경영자를 대변하여 응답하였다는前提하에 도출된 것이다.

셋째, 감사수용 概念의妥當性과 관련하여 설문서에 다양한 문항을 포함하여 내용타당성을 높이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개념타당성을 확인하였으나, 의견조사에 의한 경영자들의 감사수용이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의 감사수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의 基準妥當性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의견자료는 1991년 10월에 수집되었으며 재무자료는 1990년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자료에 있어서 시차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기업이 감사인을 고용하려는 이유를 모두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산업특성이나 내부통제조직의 특성 등과 같은 省略된 變數들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南相午(1992), “外部監查對象企業의 監查意見 區別에 관한 研究,” 經營論集,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 金評基(1992), “韓國企業의 外部監查 受容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Beatty, R.P.(1989), “Auditor Reputation and the Pricing of Initial Public Offerings,”
Accounting Review(October), pp. 693-709.
- Chow, C.W.(1982), “The Demand for External Auditing: Size, Debt and Ownership
Influences,” *Accounting Review*(April), pp. 272-291.
- DeAngelo, L.E.(1981), *The Auditor-Client Contractual Relationship: An Economic
Analysis*, UMI Research Press.
- Eichenseher, J.W., and D. Shields(1983), “The Corrates of CAP-Firm Change for Publicly
held Corporation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Spring), pp. 23-37.
- El Gazzar, S., S. Lilien, and V. Pastena(1986), “Accounting for leases by lesse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8, pp. 217-237.
- Francis, J.R., and E.R. Wilson(1988), “Auditor Changes: A Test of Theories Relating
to Agency Costs and Auditor Differentiation,” *Accounting Review*(October), pp. 663-682.
- Hagerman, R.L. and M.E. Zmijewski(1979), “Some Economic Determinants of Accounting
Policy Choi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 pp. 142-161.
- Healy, P., and T. Lys(1986), “Auditor Changes following Big Eight Takeovers of Non-
Big Eight Audit Firm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ity* (Winter), pp. 251-265.
- Jarrel, G.A.(1979), “Pro-Producer Regulation and Accounting for Assets: The Case of
Electric Utiliti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 pp. 94-116.
- Jensen, M.C., and W.H. Meckling(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October),
pp. 305-360.
- Johnson, W.B., and T. Lys(1990), “The Market for Audit Services: Evidence from Volun-
tary Auditor Chang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January), pp. 281-308.
- Myron, B.S., M.E. Sushka, and C.D. Hudson(1990), “External Monitoring and Its Effect

- On Seasoned Common Stock Issu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January), pp. 398-417.
- Nichols, D.R., and D.B. Smith (1983), "Auditor Credibility and Auditor Chang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pp. 534-544.
- Palmrose, Z.V.(1984), "The Demand For Quality-Differentiated Audit Services in an Agency Setting: An Empirical Investigation," *Auditing Research Symposium*,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p. 229-252.
- Pedhazur, E.(1982), *Multiple Regression in Behavioral Research: Explanation and Prediction*, 2nd ed.,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Simunic, D., and M. Stein(1987), "Product Differentiation in Auditing: A Study of Auditor Effects in the Market for New Issues," *Monograph*, The CCGA' Research Foundation.
- Stickney, C.P., and V.E. McGee(1982),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The Effect of Size, Capital Intensity, Leverage, and other Factor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Winter), pp. 125-152.
- Tax Notes(1982),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in 1980," Tax Note 14(March), pp. 889-944.
- Wang, S.W.(1991), "The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s: A Test of Firms' Political Success," *The Accounting Review*(January), pp. 158-169.
- Watts, R.L., and J.L. Zimmerman(1986), *Positive Accounting Theory*, Prentice Hall, Inc., pp. 156-336.
- Zimmerman, J.L.(1983),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 (August), pp. 119-149.